

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변경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01. 5. 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3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3월 2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9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01년 4월 26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성학)

- 가. 제안이유
 -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1~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중심지·역사문화·일반미관지구 3종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법령의 경과조치에 의거 기존의 1·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, 3·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, 3(관광지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)·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음.
- 나. 주요내용
 - 미관지구의 지정목적 및 건축규제 -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,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
 - (1) 중심미관지구(5층 이상)
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 - (2) 역사문화미관지구(4층 이상)
사적지,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 - (3) 일반미관지구(2층 이상)
중심지,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3. 심사결과 : 의견 없음

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변경결정(안)에대한의견청취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9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안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구(미관지구) 변경결정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	위 치	면적 (㎡)	폭원 (m)	연장 (m)	결정근거	비 고
			기정	변경						
변경	1	대방로 시흥대로 미관지구	중심지	일반	대방역광장 ~ 대림2동 993-15호	56,570	편측 10~20	3,267	서고194 (84.4.17)	신길6지구단위계획구 역내410m는제척(중심 지미관지구로존치계획)
변경	2	선유로 도림로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양평동로터리 ~ 신길광장	120,000	양측 12	5,000	서고164 (82.4.22)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	위 치	면적 (㎡)	폭원 (m)	연장 (m)	결정근거	비 고
			기정	변경						
변경	3	신길로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영등포동1가 94-1 ~ 대림동3거리	69,690	양측 12	2,930	서고336 (93.10.28)	
변경	4	도림천변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문래동4가 9-3 ~ 도림천	8,400	양측 12	350	서고194 (84.4.17)	
변경	5	도림로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신길동501 ~ 대림역	59,280	양측 12	2,470	서고164 (82.4.22)	
변경	6	서강대로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양평동3가69 ~ 영등포동7가64	42,000	양측 12	1,750	서고3 (90.1.5)	
변경	7	영등포로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영등포동6가 6-5 ~ 오목교	48,000	양측 12	2,000	서고216 (97.6.25)	
변경	8	도신로 미관지구	역사문화	일반	신길동102-8 ~ 대림동785	61,200	양측 12	2,550	서고164 (82.4.22)	

2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1~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제가 중심지·역사문화·일반미관지구 3종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법령의 경과조치에 의거 기존의 1·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, 3·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, 3(관광지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)·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음.
- 구 도시계획법의 2종(시흥대로) 및 4종 미관지구로서 중심지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시흥대로의 7개 노선의 미관지구에 대하여 노선별 토지이용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개정법령의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결정코자 함.

3. 미관지구의 지정목적 및 건축규제

(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,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)

- 중심지미관지구(5층 이상)
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역사문화미관지구(4층 이하)
사적지,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일반미관지구(2층 이상)
중심지,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첨 부 : 도면 1부

